

의안번호	2220526
의 퇴 인	김의겸 의원
회 답 일	2026.9.18.
추계번호	26E40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1조의36 (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)	○ 거주자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10년간 소득세 면제 - (거주요건) 배우자, 미성년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- (기타)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본 감면, 제18조(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), 제18조의2(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), 제18조의3(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), 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)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36 (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한 새만금사업지역 거주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소득세 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새만금사업지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거주자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날부터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면제함(한도 없음)
 - 동일 과세기간에 본 감면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(제18조),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(제18조의2),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(제18조의3)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(제30조)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근로자 수, 근로자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, 근로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수, 기존 감면제도 적용자 수 및 선택 변경 가능 인원, 해당 인원의 근로소득 및 산출세액 분포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과세기간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취업자 중 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’ 등을 제외한 순수 적용 대상 인원과 이들의 소득세 산출세액 자료가 부재하며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취업자 중 새만금사업지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인원과 이 중 기존 감면제도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순수 대상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,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